

09년 김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(BTL)
실 시 협 약

2014. 10. .

김 제 시 장
김 제 S M C 주식회사

실시협약 변경(안) 비교표

구 분	변경전 실시협약	변경후 실시협약
	전 문	전 문
제 6 조 (사업시행자의 지정)	<p>주무관청은 이러한 취지하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(이하 "민간투자법"이라 한다),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민간부문이 김제시 하수관거 시설의 설계·건설·유지관리 및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"김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(BTL) 시설사업기본계획"(이하 "시설사업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2009년 9월 25일 수립·고시하였으며, 이를 근거로 주무관청은 2009년 12월 29일 (가칭)김제SMC주식회사(이하 "사업시행자"라 한다)를 본 사업의 (우선)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본 실시협약의 체결에 이르렀다.</p>	<p>주무관청은 이러한 취지하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(이하 "민간투자법"이라 한다),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민간부문이 김제시 하수관거 시설의 설계·건설·유지관리 및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"김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(BTL) 시설사업기본계획"(이하 "시설사업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2009년 9월 25일 수립·고시하였으며, 이를 근거로 주무관청은 2009년 12월 29일 김제SMC주식회사(이하 "사업시행자"라 한다)를 본 사업의 (우선)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본 실시협약의 체결에 이르렀다.</p>
제 6 조 (사업시행자의 지정)	<p>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, 시설사업기본계획, 협약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(가칭)김제SMC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.</p>	<p>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, 시설사업기본계획, 협약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김제SMC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.</p>